

문서번호	기획과-2991
보존기간	5년
시행일자	2022.06.03.
공개여부	공개

결 재	기안	담당관	행정관	기획과장	기획처장	이사	이사	이사장
	허진	김민철	구민정	문남기	김용진	박현애	최창원	2022.6.3. 지은희
협 조								

2022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2022. 5.

서울대학교

2022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 5. 24.(화) 16:00 ~ 18:00

장소: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2. 참석현황

참석이사: 지은희(이사장), 권오규, 성기학, 최창원, 윤석민, 오세정(총장), 여정성(교육부총장), 이원우(기획부총장), 정철영, 류근관, 박현애 (이상 11명)

불참이사: 장상운(교육부 차관),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권오곤, 김병섭 (이상 4명)

참석감사: 마광열, 윤현철 (이상 2명)

배석: 김용진 기획처장(간사), 박용수 사무국장,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 (이상 3명)

3. 회의안건

보고사항

제1호.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현황 보고

제2호. 2021년 내부감사 결과 및 2022년 감사계획

심의.의결사항

제1호. 2021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제2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창업지원단)

제3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ESG위원회)

제4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5호.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II 회의 내용

1. 개회

- 지은희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4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김용진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지은희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사항

(별도사항) 「2022~204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 보고

□ 주요내용

- 지은희 이사장의 요청으로 김용진 기획처장이 2022. 3. 25. ~ 26. 이사회 워크숍에서 논의한 「2022~204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워크숍 이후 수립 진행 현황을 보고함
- 이사회 워크숍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였고 현재 학내 의사결정기구 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예정

제1호.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현황 보고

□ 주요내용

-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가 연혁, 구성원 현황, 모금 현황, 기부자 예우, 기금 운용, 기금 집행 등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보고함

제2호. 2021년도 감사결과 및 2022년도 감사계획

□ 주요내용

- 마광열 감사가 2021년도 자체감사 및 교육부 감사 결과 및 주요 사례, 2022년도 감사 방향 및 기관별 종합감사계획 등을 보고함

3. 심의의결사항

제1호. 2021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 주요내용

■ 세입결산액: 10,001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추경액 (B)	예산현 액(C) (A+B)	세입 액 (D)	비율	증감 (D-C)	징수율	2020 세입 액
합 계		9,119	375	9,494	10,001	100.0	507	105.3	9,400
본 예 산	정부출연금수입	5,124	-	5,124	5,124	51.2	-	100.0	4,844
	등록금수입	1,787	50	1,837	1,856	18.6	19	101.0	1,838
	교내 타회계 전입금	259	10	269	268	2.7	△1	99.6	222
	교육 부대 수입	259	-	259	275	2.7	16	106.2	248
	유형자산매각대	-	-	-	1	-	1	-	1
	전년도 이월금	413	124	537	755	7.5	218	140.5	253
	부설 학교 수입	-	-	-	-	-	-	-	2
	소 계	7,842	184	8,026	8,279	82.7	253	103.1	7,408
보 조 금	국 고 보 조 금	126	275	401	400	4.0	△1	99.8	427
	자치단체보조금	41	19	60	60	0.6	0	100.0	46
	전년도 이월금	-	-	-	56	0.6	56	-	4
	소 계	167	294	461	516	5.2	55	111.9	477
수입대체	수입 대체 경비	1,110	△103	1,007	1,206	12.1	199	119.8	1,515

※ 본예산(등록금수입) 및 보조금(국고)에 국가장학금(16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 세출결산액: 9,545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변동상황			예산 현액 (E) (A+B+C+D)	세출액			명시 이월 (I)	예산 잔액 (J) (E-H-I)		
		전년 도 이월 (B)	추경 액 (C)	이전 용액 (D)		지출액 (F)	사고 이월(G)	계(H) (F+G)				
총계	9,119	500	375	-	9,994	9,355	239	9,594	209	191		
대학	본예산	인건비	3,914	-	-	-	3,914	3,830	-	3,830	-	84
		운영비	816	3	-	△31	788	750	14	764	-	24
		사업비	2,526	151	-	30	2,707	2,500	178	2,678	-	29
		예비비	39	1	△15	-	25	12	-	12	-	13
		적립금	248	-	199	-	447	447	-	447	-	-
		소계	7,543	155	184	△1	7,881	7,539	192	7,731	-	150
	보조금	국고	126	56	275	-	457	435	2	437	19	1
		지치단체	41	-	19	-	60	60	-	60	-	-
		소계	167	56	294	-	517	495	2	497	19	1
	수입대체경비	1,110	233	△103	-	1,240	1,008	3	1,011	190	39	
합계	8,820	444	375	△1	9,638	9,042	197	9,239	209	190		
부설학교	본예산	인건비	163	-	-	-	163	163	-	163	-	-
		운영비	59	-	-	-	59	59	-	59	-	-
		시설비	77	56	-	1	134	91	42	133	-	1
	합계	299	56	-	1	356	313	42	355	-	1	

※ 본예산 및 보조금(국고)에 국가장학금(16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박용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창업지원단)

□ 주요내용

- 창업지원단 신설에 따라 연구부총장의 관장사항에 ‘창업’ 추가 (제13조)
- 산학협력단 사업부단장을 창업지원단장으로 겸보함 (제26조)
- 서울대 처·국 등의 목록에 창업지원단을 추가 (제28조)
-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창업 관련 신사업 기획·발굴 등 담당사항을 명시 (제37조의3)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3조(부총장) ① ~ ② (생략) ③ 연구부총장은 연구, 산학협력, 정보화 및 시흥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2020. 2. 27.] ④ (생략)	제13조(부총장)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연구부총장은 연구, 산학협력, 창업 , 정보화 및 시흥캠퍼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4. 1., 2020. 2. 27., 0000. 00. 00.] ④ (현행과 동일)	창업지원단 신설에 따라 연구부총장 관장사항에 창업 추가
제26조(산학협력단) ① (생략) ② 산학협력단에 연구정책부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두고 연구정책부단장은 연구처장으로, 사업부단장은 부교수이상 전임교원 으로 각각 겸보한다. [개정 2021. 3. 1.] ③ ~ ⑤ (생략)	제26조(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동일) ② 산학협력단에 연구정책부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두고 연구정책부단장은 연구처장으로, 사업부단장은 창업지원단장 으로 각각 겸보한다. [개정 2021. 3. 1., 0000. 0. 00.] ③ ~ ⑤ (현행과 동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단장을 산단 사업부단장으로 겸보
제28조(처·국 등)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입학본부, 국제협력본부, 정보화본부 및 시흥캠퍼스본부를 둔다. [개정 2020. 2. 27.] ② (생략)	제28조(처·국 등)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입학본부, 국제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시흥캠퍼스본부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 2. 27., 0000. 0. 00.] ② (현행과 동일)	창업지원단 신설 근거 마련
<신설>	제37조의3(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둔다. ② 창업지원단장은 창업 관련 신사업 기획·발굴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0000. 0. 00.]	
<신설>	부칙 <제0000호, 0000. 0. 0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ESG위원회)

□ **주요내용**

- 학칙에 ESG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목적,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함 (제48조의7)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절(위원회 등) <u><신 설></u>	제5절(위원회 등) 제48조의7(ESG위원회) ① <u>본교의 ESG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ESG위원회를 둔다.</u> ② <u>ESG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ESG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u>본교 ESG 정책 수립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자문</u> 2. <u>본교 ESG 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u> 3. <u>본교 ESG 정책 추진 관련 주요 계획(대학운영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권고</u> 4. <u>그 밖에 ESG에 대한 사항</u> ④ <u>ESG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	ESG위원회 조항 신설
<u><신 설></u>	부칙(제0000호, 0000. 00. 00.) <u>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4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주요내용

- 평의원회의 운영 실무상 ‘의사록’ 이 아닌 ‘회의록’ 에 안건의 심의 결과 등을 기재하고 그 ‘회의록’ 을 공시하고 있는바, 규정의 문언인 ‘의사록’ 을 운영 실무 언어인 ‘회의록’ 으로 수정 (제12조)
-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의원회 회의 결과의 신속한 공시 및 통지를 위하여 평의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서명 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 (제12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2조(의사록 등) 평의원회의 <u>의사결과</u> 를 기록하기 위하여 <u>의사록</u> 을 작성하며, <u>의사록</u> 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 이상이 <u>서명 또는 기명날인</u> 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평의원회의 <u>회의결과</u> 를 기록하기 위하여 <u>회의록</u> 을 작성하며, <u>회의록</u> 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 이상이 <u>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u>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0. 00.]	- 운영 실무 언어로 용어 현행화 - 비대면 서명 근거 신설
<신설>	<u>부칙 <제00000호, 2022. 00. 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5호.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 주요내용

-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 추천을 위한 이사회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필요
-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 (1안) 2021년 제5차 이사회(2021. 9. 8.)에서 구성한 ‘운영소위원회’ 에서 논의 후 이사회로 추천
 - (2안) 별도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 를 새로 구성 하여 논의 후 이사회로 추천

□ 심의결과

- 지은희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1안)과 같이 운영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사회로 추천하기로 하고, 성기학 이사를 운영소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정하기로 심의·의결함
<이사회 운영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 지은희 이사장
 - 위 원: (학외이사) 최창원 이사, 성기학 이사
(학내이사) 이원우 이사, 박현애 이사

4.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 2022년 제4차 이사회를 2022. 6. 29.(화)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함

5. 폐회

- 보고 및 심의를 종료하고, 지은희 이사장이 오후 6시에 폐회를 선언함